현대소설연구(제79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20.09.79.435

이태준 소설에 나타난 식민지 법제도와 공공성

—「법은 그렇지만」과 『청춘무성』을 중심으로

이 행 미*

요약

이 글은 이태준의 중편 소설 「법은 그렇지만」과 장편 소설 『청춘무성』을 중심으로 법적 토대에 기초한 공공성에 대한 인물들의 행위와 인식에 내포된 정치적인 의미를 들여다보았다. 이태준이 특히 지속해서 관심을 보인 것은 법적 차원의 정의이다. 그는 법으로 대표되는 식민지 제도로부터 배제된 존재의 삶을 조명하고, 이들의 권리를 공공영역으로 끌어올리는 문제를 서사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식민지 법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서사는 이와 같은 작가의 문제의식을 잘 보여준다.

나아가 이와 같은 배제된 존재들이 모여 형성된 집합체는 식민지 사회제도의 바깥에 있는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의 주체가 된다. 이러한 집합체는 각 개인의 사적인 삶을 끌어안고서 우애라는 정신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형성된다. 또한 이들의 연대는 국민의 기본 조건이 되는 법적 등록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국가로부터 보장받지 못하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새로운 집합체는 지배적인 공공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방향에서 추구해야 할 공적 가치를 표명한다. 이와 같은 의미는 일제 말기 식민권력이 팽배해짐에 따라 국가와 구분된 독자적인 사회 영역을 구성하기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더욱 첨예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태준은 국가법이 가하는 억압이 강력해지는 상황 속에서, 그 법의 '바깥'을 향하는 대안적 공공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이태준, 법, 법정, 정의, 식민지 공공성, 우애, 사회, 배제된 자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목차

1. 서론
2. 식민지 법정,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가시화되는 장소
3. 타자의 삶의 포옹을 매개한 식민지 법률 비판
4. 식민지 법을 초과하는 공공성과 우애의 정치
5. 결론

1. 서론

식민지 시기 법정은 참회와 비애의 눈물이 섞인 다양한 사연이 이야기되는 장소로, 방청을 희망하는 자들로 연신 붐비었다.[1] 전근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재판 풍경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의 호소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는 새로운 감각 속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상당하다. 근대적 재판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판정이 공정하리라는 사람들의 기대는 식민지 시기 민사재판 건수의 급격한 증대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는 다른 사법제도와 달리 재판장에서만큼은 형식적이나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었다.[2] 당대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이해해야 했고,[3] 이들이

1) 「기자총출동 경성 백주 암행기」, 『별건곤』2, 1926, 13면; 「암루(暗淚)에 젓는 법정의 공기 목례조차 교환 못한 비애」, 『동아일보』, 1930.3.19; 「방청객쇄도 법정대혼란」, 『동아일보』, 1930.4.10; 「조조부터 법원혼잡 철옹성가튼 경계망」, 『동아일보』, 1930.2.20.; 「참회의 눈물지우며 유아안고 법정에」, 『동아일보』, 1930.9.9.; 「법정은 누해(淚海)로 자모는 방성대곡」, 『동아일보』, 1930.10.19.; 「훤소(喧騷) 끄테 누해(淚海)」, 『동아일보』, 1930.10.28.; 「누해(淚海)된 법정 검사구형은 또 사형! 피고는 구형 듣고 대성통곡」, 『동아일보』, 1933.11.14.

2) 이는 다른 사법제도(경찰, 감옥)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것으로, 억압적 권력을 행사하는 식민지 지배기구라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다. 허영란, 「관치(官治), 식민지에서 '법의 지배': 한말·일제강점기 '법'과 '법치'에 대한 한국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51, 이화사학연구소, 2015, 59-64면.

3) 당대 잡지에는 변호사가 필진이 되어 법률에 대해 설명해 주는 기사가 여러 차례 실렸다. 다

재판을 방청하며 생겨나는 감정과 반응은 당대 법에 대한 인식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법정은 식민 통치를 보여주는 장소이면서도, 개인의 권리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개방된 장소이자, 이를 바라보는 좌중들이 새로운 근대적 법률을 접하고 이해해 나가는 장소였다. 실제로 당대 법정은 그 이전의 절차에서 구형된 판정을 뒤집고 진실과 정의를 만나게 하거나,[4] 법정투쟁을 통한 공공적 대화의 자리이기도 했다.[5] 이러한 맥락에서 이태준 소설에 식민지 법정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일례로, 『불멸의 함성』에서 법정은 죄의 고백을 통해 진실을 대면하게 하는 장소로 그려진다. 이는 식민 권력의 정당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나,[6] 같은 소설에서 국가가 없는 피식민지인의 신분 보증 문제를 국제법 차원에서 함께 다루는 부분을 나란히 놓고 볼 때[7] 그와 같은 접근이 다분히 일면적임을 알 수 있다. 이태준은 법을 위시한 사회적

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이인, 「이혼문제와 현대 법률」, 『삼천리』2, 1929.9; 「부인의 법률상식」, 『별건곤』 28, 1930.3; 이인 · 한국종 · 권승렬, 「아등과 三법령」, 『삼천리』6, 1930.5; 양윤식, 「새로 실행하는 도범등방지법의 해설」, 『별건곤』33, 1930.10.

4) 법정은 그 이전까지의 사법제도(경찰, 감옥)에서의 판정을 뒤집기도 했다. 일례로, 방화 살인미수로 7년 구형을 받은 여성에 대한 2심 판결에서 1심의 심의가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판결은 방화와 관련된 피해자의 자백이 순사에 의해 억지로 만들어진 답변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려진다. 한편 이인은 이 여성의 기구한 일생에 대한 이야기가 그녀의 눈물과 함께 법정에 있는 사람들(재판장, 검사, 경호하던 간수, 사환)에게 안타까움의 정서를 공유하게 했다고 기억한다. 변호사 이인은 '법정에서 운 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사건을 회고한다(이인, 「법정에서 운 일: 7년의 여죄인 보고」, 『삼천리』10, 1930.11). 이 글에 나타나는 법정은 피해자에게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공정성을 띠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피해자의 사연에 동정을 표하지만,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적인 근거이다.

5) 야규 마코토, 「식민지 공공성과 3.1운동- 의암 손병희를 중심으로-」, 『퇴계학논집』24, 영남퇴계학연구원, 2019, 67-97면.

6) 우정덕, 「이태준 신문 · 잡지 연재소설에 나타난 '연애'와 '계몽'의 관련성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71-72면.

7) 권은, 「제국의 외부에서 사유하기: 이태준의 『불멸의 함성』론」, 『현대문학의 연구』58, 한국문학연구학회, 2016, 226-239면.

정의를 보편적 맥락에서 고민하는 동시에 식민지 현실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보인 만큼 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태준은 법의 본질과 실제 법적 처벌 사이의 간극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준 작가이다.[8] 그런데 양자의 충돌과 경합은 식민지의 지배적 공공성을 수용하면서도 그 틈을 엿보고, 그것을 넘어서는 "공공성 확보의 새로운 공간"을 여는 계기가 된다.[9] 나아가 이와 같은 대항 공간은 개별적 존재를 사회적 존재로 구성하며,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영역을 형성하는 동력이 된다.[10] 한편 이태준의 일련의 소설에서 사회적 약자의 삶과 권리 문제에 대한 형상화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도 이와 같은 법에 대한 관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1] '실정법으로서의 법률'을 초월한 '정의로서

8) 김경수에 따르면, 이태준은 식민지 시대 작가 중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작가이다. 소재 차원을 넘어 서사구성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이는 『불멸의 함성』, 『화관』, 『청춘무성』에서 잘 나타난다. 김경수, 「근대소설과 『죄와 벌』」, 『서강인문논총』45,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254-266면.

9) 윤해동, 「식민지 근대와 공공성: 변용하는 공공성의 지평」, 『식민지 공공성-실체와 은유의 거리』, 책과함께, 2010, 40면. 사이토 준이치에 따르면, 공공성은 (1)국가에 의해 법과 정책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2) 모두에게 통용되는 공통적인 것, (3)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단일하지 않은 '공공성'에 내포된 각 의미는 서로 항쟁하는 관계를 이룬다. 사이토 준이치, 윤대석 · 루수연 · 윤미란 역, 『민주적 공공성』, 이음, 2009, 18-19면.

10) 황병주, 「식민지 시기 '공' 개념의 확산과 재구성」, 『식민지 공공성-실체와 은유의 거리』, 앞의 책, 73-83면. 한편 김현주는 식민지 시기 국가와 구분되는 '사회'가 '공'과 '사'의 경계를 흐릿하게 하면서, 새로운 방향에서 공적인 것을 규정하는 실천이 가능한 집합체의 성격을 띠며 형성되었을 규명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식민지배 초기에 해당하는 1920년대 전반기까지를 다루는데, 이는 1925년 치안유지법이 발효되는 등 식민권력의 억압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는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된다는 판단에 기인한다(김현주, 『사회의 발견: 식민지시기 '사회'에 대한 이론과 상상, 그리고 실천(1910~1925)』, 소명출판, 2013). 이러한 맥락에서 1930-40년대 발표된 이태준 소설에 나타나는 '사회'는 그 이전에 존재했던 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끔 하는 중요한 텍스트이기도 하다.

11) 한편으로 이태준이 사회적 약자 또는 소외된 자를 향한 지대한 관심을 서사적으로 구현하는 배후에는 그가 소실의 태생이고 부모를 일찍 여읜 점, 그 후 경제적 빈곤으로 고통스런 삶을 견뎌나가면서 사회적 냉대를 경험했던 자전적인 요인이 자리하는 듯하다. 민충환, 「이태준의 전기적 고찰」, 『상허학보』 1, 상허학회, 1993, 37-45면.

의 법'과의 만남은 집합체 내부에 있으면서도 내부의 동일성의 자장의 바깥에 있는 '타자'를 통해서 사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12] 특히 이태준은 여성의 삶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빈번하게 그려왔는데, 이는 식민지 시기 여성들이 법률을 비롯한 사회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간파한 데서 비롯된다.[13] 가령 근대에 들어 정형화된 근대가족 이데올로기 문제는 그의 장편 소설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소재인데, 『딸 삼형제』와 같은 장편에서는 제도적으로 구축된 정상가족을 지탱하는 법으로부터 소외된 여성 인물이 등장한다. 수난을 극복해나가는 인물의 서사에는 혼인과 이혼을 둘러싼 당대 법 현실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갈등이 나타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회적 정의에 대한 관심은 개인적 차원의 권리 수호 문제에 머무르지 않으며, 이를 확대하여 모두에게 공통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로도 나타난다.[14] 이는 이상주의적 경향을 띤다는 점에서 서사의 리얼리티를 훼손하는 비약으로 여겨지거나 구체적인 현실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식민통치를 지탱하는 법적 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의식을 거쳐 제시된 대안이라는 사실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에 기초하여 내부에서 '바깥'을 바라보며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이 지향은 현실을 괄호친 추상적 전망과는 거리가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식민지 법정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주제적 차원에서 법과 정의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는 「법

12) 자크 데리다, 진태원 역, 『법의 힘』, 문학과지성사, 2004. 33-62면.

13) 김경수, 앞의 글, 266면.

14) 이와 같은 이태준의 경향은 이태준 소설에서 이상적 공동체 모티프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한 연구들을 떠올리게 한다. 김택호, 「이태준 문학과 이상적 공동체주의」, 『상허학보』 29, 상허학회, 2010, 137-168면; 박진숙, 「이태준 문학과 종교적 이상주의」, 『작가세계』, 2006년 겨울, 94-114면; 장성규, 「이태준 문학에 나타난 이상적 공동체주의」, 『한국문화』 3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137-168면.

은 그렇지만」과 『청춘무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두 소설은 한 여성이 자유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사회적 정의의 문제가 전면화되고, '죄와 벌'이라는 소제목이 공통적으로 나오며, 법정의 서사가 중요하게 형상화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문제의식의 연속선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편소설 「법은 그렇지만」이 선행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면,[15] 『청춘무성』은 일제 말기 사회사업 문제를 본격적으로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에게 관심을 받아왔다.[16] 그중에서 특히 배개화의 연구는 일제의 정책에 의해 통제된 사회사업을 비판하고,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연대와 복수적 가치가 내포된 공공성을 재현함으로써 식민 권력의 현실에 대항하는 일상정치를 보여주

15) 「법은 그렇지만」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논문으로는 명형대와 김은정의 연구가 있다. 이 논문에서 서운은 욕망 추구에 적극적이고, 그 결과 순수성을 훼손하여 타락한 존재가 되는 인물로 평가된다. 이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화가 심우경과의 육체적 관계를 거부하지 않는 모습을 들고 있다(명형대・김은정, 「이태준 중편소설의 플롯과 작가 지향성」, 『상허학보』 11, 상허학회, 2003, 344-352면). 그러나 서운이 우경을 따라 서울에 온 것은 그가 학교를 보내준다면서 유인했기 때문이다. 서운은 처음에는 나체화의 모델이 되는 데에 거부감을 보였으나 근대적 미술의 의미 등 우경의 설유에 넘어가 결국 모델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인물의 성격과 행동 변화의 계기를 고려할 때, 서운을 애욕과 허영심을 대변하는 전형적 인물로 보는 것은 온당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글은 선행연구와 달리 서운이 세계에 대한 인식과 욕망의 변화를 보이는 입체적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우정덕은 「법은 그렇지만」과 『청춘무성』에 나오는 법정과 감옥에 주목하고는 있지만, 국가기관인 법정을 신성하게 그림으로써 신체제와 접점을 이룬다고 본다는 점에서(우정덕, 앞의 글, 69-74면) 본고의 관점과는 대조를 이룬다. 한편 이 소설의 법정 서사로서 지니는 의미는 김경수에 의해 지적된 바 있는데, "무지로 인해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가련한 여인"을 그림으로써 "인간의 삶을 규율하는 법의 비인간적 본질에 대해 관심"이 일찍부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설이라는 간략한 평가에 그친다(김경수, 앞의 글, 266면). 이와 같은 해석에 동의하나, 좀 더 상세한 분석과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16) 김경수, 위의 글, 261-266면; 배개화, 「이태준의 장편소설과 국가총동원체제 비판으로서의 '일상정치'」, 『국어국문학』163, 국어국문학회, 2013, 424-436면; 박진숙, 「일제 말기 사회사업의 텍스트화 양상과 그 의미」, 『개신어문연구』32, 개신어문학회, 2010, 139-146면; 장성규, 앞의 글, 148-155면; 채호석, 「통속과 계몽, 그리고 (제국)의 논리」, 『식민지 시대 문학의 지형도』, 역락, 2010, 163-168면.

는 작품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글은 그와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대안적 공공성의 의미를 식민지 법률 체계의 바깥을 상상하는 사유라는 점에 좀 더 중점을 두고서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의 이와 같은 성과 위에, 이 글은 「법은 그렇지만」과 『청춘무성』을 나란히 놓고 읽으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와 같은 문제가 법정이라는 공적 영역을 거쳐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적인 의미를 띠게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식민지 시기 조선의 한 작가로서 이태준이 견지한 이와 같은 정치적 태도가 지닌 의미를 구명하고자 한다.

2. 식민지 법정,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가시화되는 장소

이태준의 중편소설 「법은 그렇지만」(『신여성』, 1933.4-1934.4)은 원산 인근 섬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름답지만 무지한 서운이 선망하던 도회지로 나와 파란을 겪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서사이다. 서운은 각각의 이유로 그녀를 소유하고자 하는 남성 인물들에게 기만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방화와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때 주목할 점은 타인의 기만을 알아채지 못해 일어난 비극의 원인이 그녀가 지닌 욕망의 크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타인의 호의를 타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순진무구함, 그 호의에 의존하여 삶을 영유하고자 하는 자립적이지 못한 태도,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성공하여 물질적 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오인[17]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17) 이와 같은 오인(훌륭한 사람=부자)이 서운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는 서운이 살고 있는 섬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식으로 나타난다. 다음과 같은 대목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들은 원산이 늘 아름다웠다. 불놀이가 없는 때라도 그들의 눈, 그들의 마음 속에는 늘 원산은 아름다운 곳이었다. 물 위에 떠서 바다를 불빛으로 배에게 하는 불야성의 원산, 그리고

작용한다. 또한 서운은 파국에 휩쓸리기만 하는 인물이 아니라 이전까지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가치관의 변화를 보이는 인물이다. 따라서 서운이 정조 유린, 방화, 살인과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변화 과정과 그 계기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18]

우선 서운을 모델로 삼기 위해 서울로 데리고 온 심우경과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우경은 서운을 원산 해수욕장에서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녀를 인격체가 아닌 그림의 모델이 되어 줄 '사물'로 여긴다. 서운을 "동해변에서 주운 진주"(236면)라고 생각하는 대목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서운의 의사와 무관하게 친구인 무용가에게 그녀를 주겠다고 약속한다거나, 친구에게 넘기기 전에 서운의 육체를 소유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서운을 대하는 우경의 태도를 잘 알 수 있다. 서운이 그와 같은 우경의 태도를 감정적으로나마 막연하게 느끼게 된 것은, 우경의 본처가 찾아오자 허겁지겁 자리옷만을 걸친 채 집에서 도망쳐 나온 이후에 벌어진 사건에서 비롯된다. 서운은 허기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집 안에서

돈과 필육과 맛난 음식과 기차와 기선이 있는 원산, 그곳은 인간의 낙원과 같이 그들에게 동경되었다. 손자를 안고 언덕 위에 올라설 때마다

「어서 커서 원산 가 훌륭하게 돼라」

「어서 커서 원산 가 부자가 돼서 거기서 뿌리 박고 살아라」

하는 것이 이 섬 안 늙은이들의 소망이었다.

이태준, 「법은 그렇지만」, 『이태준 문학전집』 7, 깊은샘, 1988, 211-212면. (밑줄: 인용자) 이하 같은 작품의 인용은 본문에 면수만 병기한다. 또한 밑줄은 인용자가 강조의 표시로 친 것임을 밝혀 둔다.

18) 서운이 자신의 무지로 인해 타인의 악의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는 세 차례 나타난다. 가장 처음 그녀를 유인하는 인물은 섬에 들어오는 배를 태워서 원산 구경을 시켜준다는 남가이다. 그러나 남가가 서운의 정조를 유린하려고 할 때, 경남이 나타나 그녀를 구해준다는 점에서 이 경우는 서운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은 서울에서 학교를 보내주겠다고 속이고 데리고 간 심우경, 방화 범행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서운을 집안에 가둔 채 첩 살림을 시키는 이근철이 있다. 이 두 인물과의 관계는 모두 서운의 인식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판단 아래,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두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태연하게 본처와 함께 있는 우경을 본다. 이때 서운은 현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우경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점과 마치 "제 볼일을 다 끝났다는 듯"(255면)한 태도에 분노한다. 서운이 우경과 함께 머물던 집에 불을 지르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서운은 이성적 차원에서 자신이 대상화된 상황을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우경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상호간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감정적 차원에서 느낀 것이다.

이근철과의 관계를 통해 서운은 좀 더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인식한다. 아편 밀수업을 하며 살아가는 대서업자 이근철은 방화범으로 십 년의 징역살이를 하기 싫다면 자신의 아내가 되어 함께 살라고 서운을 협박한다. 그리고 서운이 도망갈까 하는 이근철의 우려로 인해 그녀는 "완전히 유폐된 생활"(258면)을 하게 된다.

> 「그까짓거 지나가는 순사라도 붙들고 모든 것을 자백하리라.」
> 결심에 결심도 해보곤 하였다. 십 년이라도 떳떳이 징역을 살고 나와 죄를 벗고 대처와 부자만 알던 심보를 고치고 그때까지 경남이가 장가를 들지 않고 있었다면 그와 혼인해서 어디서나 농부의 아내로나 어부의 아내로나 자유스럽게 살다가 죽고 싶은 욕망이 간절하게 치밀곤 했다. (259면)

서운은 이근철에 의해 거의 감금된 생활을 함으로써 생존을 넘어 '자유'라는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삶을 희구하게 된다. 그와 같은 바람은 여러 방면에서 서운의 인식 변화를 가져오는데, 위의 인용은 이를 잘 보여준다. 우선 서운은 훌륭한 삶이 곧 물질적 방면의 충족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전까지 그녀를 지배했던 사고에서 벗어나게 된다. 대처와 부자의 삶이 자신의 동경이자 욕망이었던 과거의 모습을 반성하게 된 것이다. 또한 서운은 자유라는 가치를 희망하게 되면서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질 필요성을 깨닫는다. 이와 같은 서운의 인식 변화는 감정적 차원의 것이지만 이후 그녀의 삶의 변화를 이끄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서운이 타인의 도움이나 행동을 좇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바로 '자유'인 것이다. 나아가 자유를 누리기 위한 조건으로 공통의 규범을 따르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감각은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전제한다. 즉, 서운의 내적 변화는 공과 사의 영역의 경계에서 공공적 공간에서 말과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되어 준다.

서운은 방화의 죄를 순사에게 순순히 자백하고, 일 년 육 개월의 형량을 선고받아 서대문 형무소에서 징역을 산다. 출옥 후 서운은 버스걸이 되어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되는데, 그녀의 기쁨은 월급의 액수가 아니라, 그 월급으로 방세를 내는 등 타인의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그렇게 서운의 자유는 노동을 통해 보장되며, 서운은 "재생의 기쁨"(267면)을 얻게 된다.

> 서운은 감옥에 들어간 것이 이근철이 집에 있기보다는 훨씬 행복이라 하였다. 일년 육 개월만 꿈적 넘기면 다시 청천백일하에 자유스럽게 나설 수도 있거니와 아직까지의 허영심을 혀를 깨물고 후회하였으니 앞으로는 건실한 새 생활이 열릴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
> …… (중략) ……
>
> 감옥 안에서 서운은 담배갑을 붙이는 것이 일이었다. 그리고 일본 여간수한테 눈에 들어서 틈틈이 일본말도 배우고 운동과 햇빛을 볼 틈도 남보다 갑절 얻게 되었다. 따라서 「감옥을 나가면 어찌하나?」하는 걱정을 간수에게 말하기도 하였다.
>
> 그럴 때마다 간수는
>
> 「염려마라 소장께 잘 말해서 너이 집까지 돌아갈 여비를 맨들어 줄 것이니」
>
> 하였다.

그러나 서운이 자신은 죽더라도 집에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몸을 더럽히고 징역을 살고 감옥에서 나오는 길로 집에는 차마 돌아갈 낯이 못되었다. 어찌해서나 서울에서 무슨 일거리든지 얻어가지고 차차 고향으로 수소문을 하더라도 경남이를 찾아서 서울서 살리라 결심하였다.

「무슨 일이든지 좋으니 서울에 있게 해 주서요」

하고 서운은 상냥스런 일본 여간수에게 만나는 대로 조르곤 했다.

그래서 서운은 만기가 되어 나오는 날은 여간수들의 주선으로 형무소 회교사(悔敎師)의 소개를 얻어 경성부 사회과에 오게 되었고 거기서는 또 버스가 경성부의 경영으로 있던 때라 시험을 보면 도저히 뽑힐 만한 일본말이 못되었으나 사회과의 힘으로 사지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스탑!」「오라잇」하는 버스걸이 된 것이다. (265-266면)

위의 인용은 '죄와 벌'이라는 소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지막 대목이다. 소제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서운이 저지른 죄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서운이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마련해 주는 사회시설의 순기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서운은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시간이 이근철에게 붙들려 자유롭지 못했던 생활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물론 징역을 다 살고 난 이후의 새 생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이 지속될 수 있는 배경에 수감 환경이 그리 가혹하지 않다는 사실이 자리한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서운은 투옥 중에도 일본 여간수에게 온정적인 배려를 받고, 나아가 이들의 주선으로 경성부 사회과의 도움을 받아 출옥 후에도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버스걸이라는 직업을 갖게 된다. 그녀는 식민지 사회의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도시 빈민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대목은 식민지 조선에서 서대문 형무소가 지닌 억압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일견 식민 권력에 대한 작가의 우호적 시선으로 읽힐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서대문 형무소는 주로 사상범의 격리 수감에 방점을 두고 있는 시설이었다. 그러나 엄격한 규율 하에 생활을 통제하면서도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던 만큼 간수에 따라 수감자를 배려하는 등의 예외가 나타나는 장소이기도 했다.[19]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둘 때, 서대문 형무소의 사회 교화 역할을 형상화하는 이 대목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서운이 사상범의 성격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녀는 지극히 사적 영역에 한정되는 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미화된다. 서운은 도시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관의 시선에 포착된, 보호받고 계몽되어야 할 일반 민중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운이 자립할 수 있는 직접적 기회를 열어 준 것이 '경성부 사회과'라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경성부 사회과는 사회적 시설을 구축하고 사회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 하에 1932년 신설되었다.[20] 이후 문맹을 계몽하는 교화강습회 개최, 부민의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 설치, 빈곤 아동 구제 등의 활동을 했다.[21] 민간단체와 협조해서 사회사업을 실시하기도 하면서, 빈민을 구제하고 민중을 계몽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이 소설이 쓰인 시기가 1933-4년임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사회 시스템의 순기능 강조는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과의 활동을 촉구하는 차원에서도 읽을 수 있다.[22]

---

19) 박경모, 「1930년대 서대문형무소의 일상」, 『한국근현대사연구』66,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83면.

20) 「경성부청 내에 사회과 신설」, 『동아일보』, 1932.6.5.

21) 「부내 오처에서 방면 교화강습」, 『동아일보』, 1932.7.23; 「서린동방면에 공설세탁소」, 『동아일보』. 1932.12.14; 「빈곤으로 영양부족된 아동들을 구제하라」, 『동아일보』, 1934.11.14.

22) 당시 경성부의 직업 소개 취직률은 그리 높지 않았고, 조선총독부는 이와 같은 정책적 책임을 방기하며 상단부분을 민간의 역할로 넘기고자 했다(조성은, 「근대 사회사업 개념과 담론에 관한 연구-1920년대와 193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2, 138-142면)는 점에서도 소설 속에서 재현된 경성부 사회과는 현실의 핍진한 재현이기보다는 작가의 바람이 투영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와 같은 사회 시스템의 집단적인 계몽 활동은 엘리트의 민중 계몽과 결이 다른 의미를 환기한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요한다. "심우경이가 서운을 유인한 죄로 붙들려 와 재판을 받은 것도 물론 그러나 그는 변호사를 대고 비용을 많이 쓰고

그럼에도 서운의 이와 같은 자립에는 지배의 논리와 질서를 암암리에 순응하게 됨으로써 식민권력을 공고화하는 결과를 이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소설의 마무리가 여기에 있지 않고, 이 사건을 경유해 궁극적으로는 다른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회의 노동자로 복귀한 서운의 갱생으로 끝나지 않고, 식민지 공공성에 대한 다른 의미를 환기하는 내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서운은 버스에서 우연히 경남과 감격스러운 재회를 맞게 되는데, 이근철에 의해 그들의 결합은 방해받는다. 자유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고서 다시 이근철에게 속박된 삶을 살 수 없는 서운은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살인을 저지른다. 그 결과 서운은 다시 재판과정을 거쳐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법은 그렇지만'이라는 소제목에 포함되는 이와 같은 결말은 소설의 주제를 전달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 그러나 검사국으로 넘어가서는 경남이의 공모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요 다만 의리와 사랑에서 나온 거짓 고백임이 드러나고 말았다. 그래서 경남이는 무죄로 풀려나오고 서운이만 구형을 받게 되었는데 서운이는 방화범이라는 중범의 전과자에다가 피해자 이근철이가 절명하고 말았으므로 으레 사형이나 무기의 중형이 구형될 것이었다.
>
> 그러나 서운의 범행은 그 원인의 반 이상이 그의 환경에 있었다. 더구나 범행 직후에 파출소로 뛰어와 자백한 것과 피해자 이근철이가 밀수입

운동을 하여 곧 집행유예로 놓였다."(265면)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서운이 처벌을 받는 문제와 대조를 보이는 것이 심우경의 경우다. 그는 기층민 서운을 철저하게 농락했고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물질적 부를 수단으로 자신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지 않는다. 이는 엘리트의 위치에 있는 인물이 문맹인 민중을 배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신의 삶과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급급해 하는 모습을 비판적으로 보여준다. 나아가 지식인 개인이 민중을 계몽하는 시혜적 활동이 지닌 한계를 환기하기도 한다. 동등한 위치에 놓이지 않는 이들이 행사하는 자선의 한계에 대해서는 『청춘무성』을 통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범으로 전과자였다는 사실이며 피해자를 찌른 단도가 역시 피해자의 유물이었다는 사실에서 서운은 관헌의 동정을 받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구형이 십오 년 징역이었으나 판결에 가서 십 년으로 언도된 것이었다.

경남이는 언도되는 날 방청석에서 일어나서 판사에게 애걸하였다.

「법으로는 서운이가 살인한 것이나 그 원인은 제게 있습니다. 제가 서운을 오해한 까닭이올시다. 저에게다가 서운의 죄를 나눠서 지워 주십시오……」

물론 어리석은 애원이었다. 그러나 검사가 헐하게 구형한 십오 년이 다시 십 년으로 줄은 것은 이 경남이의 애원에 저윽 판사의 마음이 동요된 때문이었다. (276-279면)

서운은 전과자인 데다가 살인이라는 중형을 저질렀기에, 사형 또는 그에 준하는 형량이 구형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서운은 그와 비교할 때 가볍다 할 수 있는 십 년의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인용문은 서운이 그와 같은 형량을 받게 된 맥락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한다. 우선 그녀의 범행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이 '환경'에 있다는 판단이다. 서운은 원적(原籍)이라는 용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태에 대해서도 무지한 인물이다. 게다가 타인의 호의에 쉽사리 속으며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바로 자백을 하는 모습은 그녀의 순진성을 보여준다. 이렇듯 그녀의 범행은 그 개인의 악함이 아니라 그녀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인물의 환경적 어려움을 드러내는 요인으로 '가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원산에서 서운과 경남이 처한 가장 큰 고난은 배고픔과 허기로 나타난다. 이들은 해변에서 굴을 캐고 해삼을 잡아 허기를 채우고, 주인 없는 파손된 빈 배에서 해초를 덮고 자며 생활을 유지한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이 시간이 허름한 살림에도 "비밀한 새 가정"(230면)으로 여겨질 정도로 행복감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허기를 채울 수 없는 현실의 문제는 그

행복을 지속하지 못하게 한다. 그들의 행복과 자유는 절대적인 빈곤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서운에게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경남 또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을 '훌륭한 삶'으로 간주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된다. 가난의 극복이 곧 가치 있는 삶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가난이 그들에게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가르는 긴박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물 설정과 형상화에는 빈민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작가의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앞서 서운이 감옥에서 나와 자립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서사와도 연결된다. 기층민의 가난이라는 명백한 현실 문제에 대해 공적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경남의 간절한 호소이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에게 서운의 죄를 나눠서 지게 해달라고 호소한다. 이는 서술자에 의해 "어리석은 애원"이라고 의미 부여되는데, 그 어리석음이 공명정대해야 할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다. 경남의 순정한 마음과 이들의 상황, 그리고 사랑이라는 가치가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법정에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법체계의 '예외'에 속하는 판결은 식민지의 사법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틈을, 미미할 지라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균열이 가능한 것은 법정의 '공공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하게끔 한다. 법정은 기층민 경남이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그 이야기가 일시적이나마 공적 차원에서 수용될 수 있는 통로로 나타난다. 공론장을 형성하거나 거기에 가담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큰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은 그렇지만」에서 그려진 법정은 사회적 정의를 구현했을지라도, 원칙과 절차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진 장소로 그려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23] 이는 법정이 식민 통치의 효율을

꾀하는 제도이긴 하나, 보편적 가치에 호소하여 견고한 통치성의 벽에 틈을 만드는 장소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태준의 소설에서 소외된 자,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의 이야기가 법의 문제와 연계되어 서사화되고 있다는 점은 시대적 맥락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각 개인의 의식이나 감정이라는 사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정신적 가치가 공적 차원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같은 결말은 구성된 지배적인 공공성을 뒤흔들게 하는 대안적 공공성을 이태준이 어떠한 방향에서 구성해 나갔는지를 떠올리게 한다.[24]

3. 타자의 삶의 포옹을 매개한 식민지 법률 비판

앞서 살펴본 「법은 그렇지만」에 나타난 식민지 공공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일제 말기 발표된 『청춘무성』(1940)[25]에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 최득주는 「법은 그렇지만」의 서운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거쳐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인물이다. 그러나 득주는 서운과 달리 자신의 사상을 뚜렷하게 견지하고 의사를 표현한다. 서운이 자유라는 가치를 감정적 차원에서 느끼고 이를 억압받게 될 위기에 처해 살인이라는 극단의 방법을 취하는 반면, 득

23) 변호인마저 울음을 참기 힘든 법정의 이야기는 당대 현실에서도 존재한다. 그러나 선고가 바뀌는 경우는 그와 같은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근거에 토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은 그렇지만」의 법정의 판결은 합리적 성격을 띤다고 보기 어렵다.

24) 「법은 그렇지만」에서 대안적 공공성에 대한 전망은 제시되지 않는다. 사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약자의 처지와 권리문제가 공공적 공간에서 발언되는 데서 머무른다. 한편 이들의 발언에 내포된 가치를 자신과 비슷한 다른 존재들과 나누면서, 공통적인 이해관계에 도달하는 집합체를 구성하는 문제는 『청춘무성』에서 나타난다. 3장과 4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25) 『청춘무성』은 1940년 3월 12일부터 8월 10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되었으나 미완의 상태에서 연재가 중단된다. 그러나 같은 해 박문서관에서 단행본으로 완결되어 출간된다.

주는 목적의 정당성을 위해 수단의 정의롭지 못함을 자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이성적 사유가 가능한 인물이다.[26]

득주는 생계를 위해 다니던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그만두고 여급 생활을 하게 되는 인물이다. 기미년에 오빠가 상해로 떠난 이후 어머니가 눈이 멀게 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언니가 기생이 되고 득주 또한 비슷한 길을 걷게 된다.[27] 득주가 여급이 되는 일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은, 현실을 절망하고 냉소하던 시기뿐만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는 원치원의 인정과 원조에 감화된 이후에도 카페 '마이 디어'로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 득주에게 여급이 되는 것은 "주림과 질환과 부채의 소굴"(276면)인 집에서 생존하기 위한 노동의 장소이다. 그러나 여급 생활의 비참한 실상을 목도하면서 세상의 불합리함을 직시하게 된 득주는 이들의 삶을 구제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구상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호 윤천달에게 정조를 교환 수단 삼아 십만 원을 줄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윤철달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득주는 결국 소절수를 훔쳐 이를 교환하던 중에 체포된다.

이로 인해 득주는 재판을 받게 되는데, 『청춘무성』에서 그려지고 있는

---

26)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득주와 윤천달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득주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켜줄 사업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호 윤천달과 육체적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윤천달이 약속을 어기고 십만원을 주지 않는다. 득주는 『죄와 벌』의 라스콜리니코프가 노파를 살해한 것을 떠올리며, 최후의 수단으로 살인이라는 방법을 떠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전 득주의 내면에는 큰 번민과 함께 반성이 나타난다. 그녀는 라스콜리니코프의 길이 최종적으로 그(라스콜리니코프)에게 '후회'로 의미화되었다는 것을 떠올리며, 이 방법이 정의가 될 수 없는 '최악의 수단'이자 "라스꼴리니고프의 시험제(試驗濟)"임을 명료하게 인식한다(이태준, 『청춘무성』, 『이태준문학전집』 14, 깊은샘, 2001, 338면). 이후 변호사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정조를 수단으로 사업 자금을 취하고자 했던 것 자체가 문제라는 사실을 반성하기도 한다(352면). 이하 같은 책의 인용문은 본문에 면수만 병기하며, 밑줄 친 부분은 인용자가 강조를 위해 표시해 둔 것임을 밝혀둔다.

27) 이와 같은 상황도 「법은 그렇지만」과 대조적이다. 「법은 그렇지만」의 서운과 달리, 『청춘무성』의 득주의 빈곤은 오빠의 상해행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 독립운동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인물 설정은 이 소설의 내용과 주제와도 연관성이 있다.

법정 서사는 각별히 주목을 요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법정은 공개적 발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장이자 그것이 직접적으로 판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공공 영역의 틈을 만들어 내는 장소이다. 물론 사회적으로 분류된 죄목에 상응하는 벌을 순순히 인정하는 것은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를 수용한 이가 현실사회로부터 '버려진 존재'에 가까운,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자신의 죄를 책임지는 문제는 자유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으로, 사회적 차원에서의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딛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청춘무성』의 문제성은 법의 공정성 차원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한 층 더 심화된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소외된 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변호사의 발화를 통해 드러난다.[28]

> "그러니까 우리 변호라는 것도 공연히 있는 죄를 덮어 주자는데 정신이 있는 게 아니오. 경찰이나 검사국서는 너무 범죄만을 추궁하니까 피고들의 악한 방면만 확대해 보게 되니까 늘 피고들에게 과중한 치형이 되기 쉬운 것이요. 그런 위험을 떠나 정말 법이란 누가 강제로 시행시킬 것이 아니라 피고 자신들의 일종 공중도덕을 준수하는 자각에서 가장 적당한만치 벌을 요구하도록 죄인과 사법자의 중간에서 법의 위치와 함께 알선하는 것이 우리 변호사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숨기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번연히 드러난 죄에 억지로 법을 피하려는 그런 음모를 나허구 허자는게 아니오." (352면)

28) 『청춘무성』의 이채는 식민지 시기 발표된 소설에서 변호사가 긍정적으로 형상화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가까운 예로 「법은 그렇지만」에 등장하는 변호사도 그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신념이나 정의와 상관 없이 대금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그려진다. 이러한 변호사의 모습은 이광수의 『개척자』, 『흙』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처음 득주는 자신의 죄에 따른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므로, 변호사의 변호를 받기를 거절한다. 그 이유는 같은 카페의 여급 도시꼬와 관련된 일화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29] 이때 득주는 동료들이 변호사를 대자는 의견에 반대하면서, "마땅한 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벗고 다시 순결한 신생을 얻으려는 도시꼬"를 위해 "감형운동을 하는 건 그의 거룩한 정신을 모독"(316면)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표한다. 이와 같은 견해는 속죄와 갱생이라는 기독교적 모티프를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의 법에 종속되는 것이 곧 자유를 발휘할 수 있는 주체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다.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유를 발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다.[30] 그러나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변호사는 자신의 역할이 죄의 무게보다 적은 벌을 받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공정성에 토대하여 정당한 벌을 받도록 인도하는 데 있다고 말하면서 그녀를 설득한다. 법을 준수하여 주체가 되는 문제를 넘어 주체가 되기 위한 법 자체의 정당성을 묻고 있는 것이다.

득주는 변호사의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면서, 실제의 죄보다 과중한 벌을 받는 일이 개인의 억울함을 발생할 뿐 아니라 법률을 악용한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폐해를 낳는다는 의견을 펼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서사가 전개되면서 식민지의 법이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득주를 치안유지법에 저촉되었다고 보고 중형을 구형하고자 하는 검사국의 모습을 통해 작가의 비판적 시선은 더욱 예각화된다.

29) 도시꼬와 관련된 일화는 다음과 같다. 그녀는 아비 없는 자식을 낳아 몰래 기르다가, 자신의 장래를 위해 아이를 천주교당 문 앞에 버리고는 고아원에서 길러주길 바란다. 그러나 추운 겨울에 아이는 결국 얼어죽게 되고, 도시꼬는 비밀리에 사직공원 뒤에 아이를 묻는다. 도시꼬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던 생모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살인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한 「마주르카」라는 영화를 보고 자신의 죄를 자백한다.

30) 알랭 쉬피오, 박제성 · 배영란 역, 『법률적 인간의 출현』, 글항아리, 2015, 55-68면.

1925년 치안유지법 제정 이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듯한 사건에도 법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했다.[31] 이와 같은 비합리적인 적용이 가능한 것은 치안유지법 자체가 총독부에 의해 가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과도 관계가 있다.[32] 자유주의적 사상행동이 치안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징역 오 년을 구형하는 검사의 모습은 식민 권력의 비합리적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요컨대, 이 장면은 보편적인 법 적용의 문제를 논하면서 당대 치안유지법이 공정성과 합리성을 내포하지 않는 법률임을 암암리에 비판한다.

변호사가 검사와 다른 방향으로 득주의 사업을 해석하면서 변론을 하는 부분은 그 비판적 시선이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 그는 득주의 사업이 "공안을 방해할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여급의 정당한 권익의 보장, 정신생활의 향상지도, 사생아의 보호, 그런 것이 중요 목표"로, "위험성을 내포한 사상운동"으로 간주될 여지가 없으며, "오히려 암흑사회에 광명과 범죄방지를 위한 훌륭한 사회 교화 정신이라 보는 것이 타당"(357면)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회 교화의 역할을 해야 할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탄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득주가 윤천달에게 훔친 돈의 액수가 크다는 점을 문제시하는 검사의 발언에 반박하는 부분이다. 변호사는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부호를 치료한 의사가 치료비를 청구한 사례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언급하면서 논의를 펼친다. 한 의사가 부호의 중병을 치료한 비용으로 사천 달러를 청구하였는데, 부호가 그 치료비가 많다고 소송을 한다. 그러나 의사가 치료비를 책정한 근

31) 배개화, 「1930년대 말 치안유지법을 통해 본 조선 문학: 조선문예부흥사 사건과 조선 문학자들」, 『한국현대문학연구』28, 한국현대문학회, 2009, 205-241면; 최종길, 「식민지 조선과 치안유지법의 적용-1926·27년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30, 한일관계사학회, 2008, 497-531면.

32) 변호사 권승렬은 치안유지법, 제령위반, 보안법이라는 세 법령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해석에 따라 자유자재로 활용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국가를 위한 법률'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이인·한국종·권승렬, 앞의 글, 31-32면.

거는 최근 부호가 산 말 한 필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자신의 목숨이 이보다 적지 않다는 논리로 의사는 승소한다. 변호사는 윤천달과 득주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윤철달은 성냥 한 개비 대신 백 원 지폐 한 장을 태우는 사람으로 그에게 십만 원은 성냥 천 개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경제적 능력 등의 개별적 차이에 따라 죄와 벌을 부여하는 법의 논리가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상대적 평등의 의미가 담겨 있다. 또한 변호사의 변론은 "모든 피고들을 단죄하는 것이 법률인 동시에 모든 피고를 사랑하고 애끼는 것도 정말은 법률"(358면)이라는 의미 부여로 마무리되면서 누구에게나 편견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의 평등성의 의미가 강조된다. 이처럼 변호사는 법의 보편적 가치를 통해 식민지의 법률의 문제에 대해 논박한다.

이때 변호사가 주장의 준거를 미국의 사례에서 찾고 있다는 점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33] 변호사는 윤천달이 여성을 유인한 문제를 비판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주장의 배면에도 미국의 영향이 자리한다. 그는 "미국 같은 자유주의의 나라, 더구나 여권옹호의 사회라면 무죄일 뿐 아니라 이쪽에서 도리어 상당한 위자 청구도 성립"(359면)된다고 본다. 그런데 이 소설이 발표된 일제 말기의 정세를 고려할 때, 미국 문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이 신문 연재소설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더군다나 "법률이란 어느 국가에서난 자기네 습속을 토대로"(359면) 하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무죄 선고를 받지 못한다는 말에는 일본 제국보다 미국의 법이 더 높은 수준에 있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이태준은 변호사의 말을 빌려 총독부의 법 적용의 후진성을 향한 비판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법은 그렇지만」의 법정 서사가

33) 이는 원치원과 고은심, 그리고 조오지 함의 삼각관계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원치원은 정신주의에 경도된 사고를 반성하는 과정에서 물질과 정신이 결합된 미국 문명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는 다음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배개화, 「이태준의 장편소설과 국가총동원체제 비판으로서의 '일상정치'」, 앞의 글, 429-432면.

당국의 사회 교화 시스템의 적절하면서도 활발한 활동을 고취하는 의미를 전달한다면, 『청춘무성』의 경우 법을 관장하는 식민지 조선의 공적 영역이 불합리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만큼 보다 전면적인 비판이 나타난다.

식민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은 득주의 수형 생활이 재현되는 방식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감형을 받아 최종적으로는 2년 6개월의 언도를 받은 득주는 형무소에서 "암흑과 고독과 고통과 모멸의 날들의 연속"(359면)인 시간을 보낸다. 별도의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이와 같은 표현으로만 제시된 득주의 수형 생활은 그 엄혹함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러한 재현은 파시즘으로 치닫던 일제 말기의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한편 출옥 이후의 희망을 위해 고난을 이겨내리라는 마음가짐은 「법은 그렇지만」의 서운과 마찬가지나, 득주에게 형무소의 생활은 교화의 차원에서 볼 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득주는 이미 독자적으로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자신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만큼 교화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득주의 사업이 함축하는 의미는 거듭 강조할 필요가 있다.

> "제 주위엔 너머나 불행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시되구 악용이 되구 그런데다 이들처럼 외롭구 이들처럼 행복에 초조한 무린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처럼 생활이 무언지 인생이 무언지 연애가 무언지 전혀 모르는 무리도 없습니다. 육신으로나 환경으론 누구보다 그런걸 강렬히 요구허게 되었는데 누가 이들에게 바른길을 일러줍니까? 이런 여자들 집안에 지도할 만한 웃사람이 있을 리 없지요. 사회가 이들을 교화시키는 무슨 기관이 어딨습니까? 행복엔 조급하고 행복이 무언진 모르고 얼마나 위험한 기근잡니까? 무슨 미끼든 덤벼들어 뭅니다. 무비판한 연애, 무책임한 임신, 가정없는 사생아들의 운명, 탈선한 모성애의 범죄, 이 길을 헤여나지 못하고 되풀이만 하다 인생은 절망하고 마는 무

> 리들, 얼마나 큰 사회문젭니까? 교육이라거나 교회라거나 인류에게 필요하다면 가장 급선적으로 가장 응급적으로 시켜야 할 인생문맹이 이들인 걸 사회는 왜 모릅니까?" (353면)

득주가 구상하는 사업은 카페 여급, 고아와 사생아의 삶에 다시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자선기관을 설립하는 데 있다. 득주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여급이 되더라도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며, 사회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낙인 찍혀 무시당하는 존재인 여급, 심지어 법적 사회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지 못하는 사생아를 낳아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인륜을 저버리게 되는 이들을 돌보지 않는 사회를 강도 높게 비판한다. 득주는 이들의 불행이 그들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세간의 편견과 제도적인 구제 시스템이 불비한 사회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본다. 「법은 그렇지만」에서의 '환경'이 개인을 비극적 삶으로 이끄는 원인이 된다는 인식이, 『청춘무성』에서는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든 사회를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방식으로 심화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다른 인물이 아닌 득주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득주는 교화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여급을 시혜적 위치에서 바라보지 않는다. 득주는 그들과 "같은 전장(戰場) 같은 전사로서의 진정"(299면)을 갖고서 이 문제에 접근한다. 여급으로 대변되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구체적인 타자의 삶(생명)에 대한 관심은 그 속에서 자신이 겪은 실제 경험을 통해 촉발된다. 그리고 득주와 다른 여급 동료들 간의 친밀한 유대 관계 형성은 비인칭 다수를 향한 균일한 지원이 아니라 고통을 호소하는 신체를 갖춘 타자를 향한 실질적인 배려를 가능하게 한다. 득주는 사회적 영역에 머물러 있는 비통한 목소리를 공공적 공간으로 끄집어 올려 이야기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34]

따라서 작품 말미에 등장하는 이 사업의 현실화된 장소인 재락원(再樂

圓)이 상기하는 의미는 거듭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35] 득주는 수리사업과 광산에 성공한 원치원의 자금 원조에 힘입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게 된다.[36] 재락원은 '존재하면서도 그 존재를 숨겨야 하는 이들', '응답받지 못한 목소리를 지녔던 이들'이 자신의 존재와 목소리를 가시화할 수 있는 장소이다. 식민지 공공영역에서 배제된 이들이 모여 만든 집합체로서 새로운 공공성의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사생아는 식민지 법제에서 아무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이 시설은 당대 법적 질서에 문제를 제기하는 장소가 된다. 식민지 법 현실에 의해 가해진 배제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득주는 경성부에 가서 아이 없는 가정을 조사하여 입양을 주선하는 등 사생아와 고아가 민적에 등록되어 정당한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득주의 사업은 식민지의 공적 제도 및 정책 아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으면서도, 고정화된 사회 구성원의 범주에 대한 인식을 깨부수면서 다른 형태의 사회

34) 사이토 준이치, 앞의 책, 106면.

35) 선행 연구에서 '재락원'의 의미는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또한 그것이 봉천 동선당에서 비롯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청춘무성』의 '재락원'이 교화와 자선 기관의 의미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는 관점을 취한다. 또한 지배적 법적 질서에 의해 배제된 자의 목소리를 공공 영역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당대 질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와 같은 의미는 '재락원' 사업을 주도해나가는 인물들의 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36) 『청춘무성』에는 최득주의 사업과 더불어 원치원의 사업 또한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진다. 특히 작품 말미에 원치원이 사업에 투신하는 모습은 서사 초입에 정신주의에 경도되어 환경보다는 자기 수양과 책임, 개인의 심리와 인생관이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습에서 인식의 전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리사업을 하거나 광산의 근대화에 몰두하는 모습, 그로 인해 얻게 된 부로 문화 사업에 투자하는 모습은 정신의 고양을 위해서는 물질적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잘 보여준다. 한편 치원 또한 득주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공사 허가증을 받는 등 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려진다. 이는 식민지 공공성에 대한 비판은 그 틈을 만들어내고, 다른 방식으로 공공성을 구성하는 비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작가의 판단이 개입된 형상화로 보인다.

를 상상한다. 이는 식민권력에 의해 타율적으로 지배되고 관리되는 신체를 만들고자 하는 통치 논리에 균열을 일으킨다.[37]

4. 식민지 법을 초과하는 공공성과 우애의 정치

앞 장에서 언급했다시피 득주의 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그녀가 교화(또는 구제)의 주체인 동시에 객체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사업의 구체적인 구상은 득주가 주도하지만, 그의 동료인 다른 여급들이 득주에게 교화의 대상으로 객체화되지 않는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는 득주가 검사국에 잡혔을 때 도와준 백희선에게 감격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 고마운 것은 백희선이었다. 처음부터 사식을 넣어 주었고 속옷을 자주 갈아 넣어 주었고 수지, 치약 같은 것 조금도 옹색치 않게 보살펴주었다. 득주는 전에 어느 남자 전문학교에서 한 연극을 구경한 생각이 났다. 어떤 노동자 하나가 짐 잔뜩 실은 구루마를 끌고 고갯길에서 애쓰는 것을 누가 뒤에서 밀어준다. 노동자는 너무나 고마워 「당신이 누구십니까」 묻는다. 뒤에서는 「나도 당신과 같은 노동자요」하고 대답이 왔다.
>
> '지금 나에게 밥을 주고 옷을 주고!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
>
> 외롭고 암담한 속에 따스한 손길을 넣어 주는 사람이 천사가 아니고 무어냐?
>
> 세상 사람들아 우리를 천한 계집들이라 불행한 인생들이라 비웃지 말

37) 이 지점에서 원치원이 구상한 사업과 최득주의 사업이 가진 의미에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려 한다. 원치원의 사업은 영화, 극장, 출판, 체육 등 문화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각종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는 문화와 정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총독부 중심의 당대 사업을 비판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원치원의 사업은 당대 맥락에서 볼 때 현실화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 반면 득주는 봉천의 동선당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내용 또한 상당히 조직적이다. 그 점에 있어서 『청춘무성』에서 보여준 정치적 메시지는 최득주의 사업을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난다고 판단된다.

라! 우리의 등없는 거리에도 천사는 있다! 아니, 천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정말 자기를 바칠 사람은 제 자신 천하고, 제 자신 불행한 우리들이 아니면 안 된다!' (250면)

검사국의 쇠창살 안에 있는 득주는 자유롭게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생각한다. 그와 동시에 같은 여급의 처지에 있는 백희선이 정성스럽게 자신을 돌보아준다는 점에 감격하면서 예전에 본 연극 내용을 떠올린다. 득주는 노동자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위할 수 있는 이가 같은 노동자이듯, 여급인 득주에게 따듯한 손길을 건네는 사람 또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인 여급이라는 생각에 이른다. 동등한 처지에 있는 이들의 연대에서 출발한 득주의 사업이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특히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불행과 비통함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이들의 연대에 근간을 둔 이 사업은 세간의 인식을 넘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발화하고 공적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평등의 가치 또한 내포한다.

공통된 처지와 문제의식, 그로부터 촉발된 이상이 결합의 핵심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은 고은심과 원치원의 관계에서도 흡사하게 나타난다. 서사 내에서 은심과 치원은 서로 애정을 갖고 있지만 두 번이나 헤어진다.[38] 결말에 이르러 이들은 다시 만나게 되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결혼하게 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들의 결혼이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라는 의미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은심이 계속 주저하던 치원과의 결혼을 결심하는 결정적 계기는 득주의 설득에 의해서다. 득주는 미국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온 은

38) 원치원을 향한 득주의 빗나간 애정이 이들의 관계에 오해를 낳게 한 사건이다. 이들은 이 일로 한 번 헤어지며, 우연히 동경에서 다시 재회한다. 그러나 치원은 은심과 약혼을 한 조오지・함이 치원과 은심의 진정한 사랑을 축복하며 떠나겠다는 태도에 감격과 초라함을 동시에 느끼고는 스스로 이별을 택한다.

심이 교육에 종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원치원과 함께 사회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일이 더욱 뜻깊은 일이 되리라고 제언한다. 이와 같은 득주의 말은 은심에게 있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치원과 대등하게 설 수 있다는 생각에 확신을 갖게 한다.[39]

이처럼 최득주와 은치원이 결심한 사회사업의 형태는 참여하는 이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사업의 정신에 공명하고, 정신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상을 띤다. 그렇기에 이들의 사업이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정신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의 부조리를 깨닫는 것이 개인의 자각적인 '의식 개혁'에서 시도되고, 공감과 우애라는 사랑의 실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들의 사업은 상호간의 믿음과 협동에 기반을 둔다. 이는 현대 법률의 재산권에 대한 득주의 비판적 진술과 연결할 때 더욱더 흥미롭다. 득주는 돈의 근본정신이 개인의 이익추구가 아닌 사회적으로 유의미하게 활용하는 데에 있다고 보면서, 법률이 재산의 소유권만 보호하고 용도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문제시한다.[40] 우애에 기반한 이들의 사업은 정신적 가치를 통해 돈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경제적인 유용성을

39) 이와 같은 해석에는 은심이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신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이 충만하다는 점이 근거가 된다. 은심은 두 번째로 치원과 헤어질 때, 그가 자신의 체면에 급급하여 이별을 고하는 행동이 마치 여성을 포로와 같이 여긴다고 비판한다. 다음과 같은 은심의 말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남성 영웅주의자들이 어딨냐 말요? 여잔 뭐 저희 체면체루나 일루 보내지구 절루 보내지구 허는 포로란 말인가? 조오지 · 함은 물론, 원선생두 난 단념헌 지가 오래구, 또 학교일도 지난 학기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충실히만 험 무슨 일이든 사랑만 못허지 않을 거 같어." (395면)

40) "'현대의 법률은 재산의 소유권만 보장만 해줄 뿐, 그 재산을 좋게 운용하거나 나쁘게 낭비하거나엔 도모지 불간섭이다. 돈이란 애초에 왜 생긴 거냐? 사회생활을 위해, 즉 여러 사람의 편리를 위해 생긴 것 아니냐? 만일 한사람만이 존재한다면 돈이란 뭣허는 거냐? 사회생활, 국가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게 돈이라면 한 개인이 어떤 기회를 만났다 해서 잔뜩 몰아가지고 자기 향락만을 위해 낭비하는 건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예가 아니요 또 돈의 근본정신에도 위반일 게다! 법률이 재산의 소유권만 보호할 뿐 용도에 간섭치 않는 건 으레 악용보다 선용을 할 것을 모든 소유자에게 인격적으로 믿는 때문이라고밖엔 생각할 수가 없다!" (318-319면)

창출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사업의 구상이 소설 속에서 인물의 발화를 통해서도 언급되는 가가와 도요히코(賀川豊彦)가 새로운 사회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협동조합운동의 가치를 상기하게 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가와는 유물론적 경제사관에 반대하며 경제구조의 변화와 개혁에는 의식이나 감각이 전제이자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경제에 있어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설파한 바 있다. 그가 제시한 협동조합운동의 가치는 기독교적 형제애(우애)의 정신과 합치한다. 그는 교환가치를 정신적(종교적) 가치로 바꾸어 '애타적인 노동경제'를 이루자고 주장했다.[41] 텍스트 내에서 직접 거론되기도 했거니와 당대 일본과 한국에 널리 소개되었던 가가와 도요히코의 사상을 이태준이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42]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이 소설에 나타나는 사업이 가지는 정신은 이상적인 면은 있지만 작가의 허무맹랑한 공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가 제시한 사업의 방향은 정신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만남으로써 식민지 현실의 '바깥'을 상상하는 작가의 이상을 담아내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아가 『청춘무성』에 나타난 연대는 국민의 기본 조건이 되는 법적 등록을 초과하는 의미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정상가족을 벗어나는 형태의 대안 가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 나타난다.

41) 가가와 도요히코, 홍순명 역, 『우애의 경제학』, 그물코, 2018, 30-70면.

42) 『청춘무성』에서 최득주의 목소리를 통해 가가와 도요히코가 언급되는데, 이는 사생아로 태어났음에도 사회운동가가 되어 타인과 사회에 인정 받는 인물이 되는 이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박진숙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박진숙, 「일제 말기 사회사업의 텍스트화 양상과 그 의미」, 앞의 글, 140-141면). 이 글은 가가와 도요히코가 사생아와 빈민을 위한 사회사업을 향한 인물의 결심을 촉발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인물이라는 데서 나아가, 소설 속에서 구현되는 사회사업의 의미가 가가와 도요히코가 제시한 노동협동조합, 경제에 대한 인식, 사회에 대한 이해와 만나고 있는 지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은심은 무엇으로나 자기의 행복을 득주와 나누고 싶었다. 그리함으로써 자기는 더 행복일 것 같았다. 득주가 자기가 기르는 아이들에게 오직 난처한 문제는 민적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 갈 나이가 가까워 올수록 걱정이다. 자기 집 호적에 올리고 싶으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자기에겐 남편이 없으니 누가 낳었다고 출생계를 할 수가 없다. 억지로 한다면 모두 애비없는 사생아가 된다. 더구나 나중에 남의 집으로 시집들 어가야 할 계집애들에겐 사생아라는 명목은 전과자라는 것보다도 더 불리한 것이 된다. 이런 득주의 고민을 덜어줄 길은 오직 자기에게 있는 것을 은심은 깨달은 것이다. 치원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사실상 아내 노릇은 자기가 하지만, 법률상 아내는 득주를 시켜서 그 가련한 아이들의 장래를 암담케 하는 「사생아」라는 검은 구름장을 쓸어주리라, 결심한 것이다.

그러나 득주는 굳게 거절하였다.

… (중략) …

은심의 과도한 호의를 사양하기 위해 「나두 인제 혼인헐테야」라는 방패막이로, 자기의 의견대로 혼인게도 은심을 신부로 내이게 하고, 아홉 아이를 모두 은심의 자녀로 비로소 호적에 올렸다. 그리고 갑자기 아홉 자녀의 아버지가 된 치원과, 그 어머니가 된 은심과, 사실상 기르는 어머니인 득주는 성대한 잔치를 열고 아홉 자녀를 안고 세우고 앉히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414-415면)

은심과 치원, 재락원의 아이들, 그리고 득주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가정의 형태는 근대 가족 이데올로기와 조선민사령에 의해 고정화된 법적 가족이라는 두 '정상가족'의 규범에서 모두 이탈한다. 이들이 이와 같은 독특한 공동가정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사생아가 되어 장래를 망치게 될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가정은 하나의 동료 관계로 형성된 단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이와 같은 가족은 세 인물이 서로를 대등한 인간으로 여기고, 우애와 같은 친밀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안 가족의 구상은 당대 법률을 고려할 때 쉬운 선택이 아니다. 은심이 민적을 갖지 못해 사생아가 되어 사회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될 아이들을 걱정하는 득주를 돕고자 법률상 아내의 지위를 득주에게 주겠다는 생각이 그 단적인 예가 된다. 식민지 조선의 가족법은 여성의 법적 지위를 호주와의 관계 속에서만 인정했는데,[43] 이와 같은 은심의 결정은 치원과의 부부관계에서 비롯된 모든 법률 행위를 행사할 지위를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다. 호적에 등록되는 일이 국민 또는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개인의 신분 표지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법이 아닌 우애를 통해 결속하게 되는 이와 같은 가정의 형태가 식민 통치의 근간이 되는 질서를 문제시한다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이들은 당대 가족을 지탱하는 권리의 준거가 되는 법률, 국가의 축소판으로 여겨지는 가족을 구성하는 법적 원리를 오히려 수단으로 여길 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의 연대는 국가의 정책과 일정 부분 공모하면서도 이를 내파하며, 국가법의 바깥을 향하는 대안적 공공성을 제시한다. 요컨대, 이태준은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과 그 속에 담긴 가치를 주제로 형상화함으로써 현실 사회와 정치를 비판하는 동시에 이를 재구성하는 전망을 내보이고 있다.

5. 결론

이 글은 이태준의 중편 소설 「법은 그렇지만」과 장편 소설 『청춘무성』을 중심으로 식민지의 법에 대한 비판적 조명을 통해 식민지 공공성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면면을 들여다보았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타자의 자유

43) 전경옥 외, 『한국여성정치사회사』 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4, 64-65면.

와 권리를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은 식민지 법치의 영역의 가장자리에 존재하는 이들이 스스로 말과 행위를 통해 가시화되는 모습을 통해 구현된다. 이와 같은 타자들의 연대는 식민지의 법의 가치를 재질문하는 하나의 사회 집단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성격을 띤다. 이태준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일제 말기 식민권력이 팽배해짐에 따라 국가에 속하지 않는 사회를 구성하기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더욱더 첨예하게 드러난다.

한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의 일환인지 이태준의 소설에서 여성 간의 연대를 다루는 내용은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청춘무성』에도 우애의 감정을 나누면서 적극적으로 연대를 도모하는 이들은 사회적으로 권리를 박탈당하기 쉬운 여성 인물이다. 여기에는 당시 식민권력에 의해 시민(국민)으로 호명받기 어려운 존재를 통해 제국의 논리를 보다 전면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작가 의식이 자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태준의 소설은 전근대를 막론하고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이를 지탱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이태준, 「법은 그렇지만」, 『이태준 문학전집』 7, 깊은샘, 1988.
_____, 『청춘무성』, 『이태준 문학전집』 14, 깊은샘, 2001.

『동아일보』, 『별건곤』, 『삼천리』

2. 단행본

가가와 도요히코, 홍순명 역, 『우애의 경제학』, 그물코, 2018.
김현주, 『사회의 발견: 식민지시기 '사회'에 대한 이론과 상상, 그리고 실천(1910~1925)』, 소명출판, 2013.
사이토 준이치, 윤대석 · 루수연 · 윤미란 역, 『민주적 공공성』, 이음, 2009.
알랭 쉬피오, 박제성 · 배영란 역, 『법률적 인간의 출현』, 글항아리, 2015.
윤해동 · 황병주 편, 『식민지 공공성 실체와 은유의 거리』, 책과 함께, 2010.
전경옥 외, 『한국여성정치사회사』 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4.

3. 논문

권은, 「제국의 외부에서 사유하기: 이태준의 『불멸의 함성』론」, 『현대문학의 연구』58, 한국문학연구학회, 2016, 213-247면.
김경수, 「근대소설과 『죄와 벌』」, 『서강인문논총』 45,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239-272면.
김택호, 「이태준 문학과 이상적 공동체주의」, 『상허학보』 29, 상허학회, 2010, 137-168면.
명형대 · 김은정, 「이태준 중편소설의 플롯과 작가 지향성」, 『상허학보』 11, 상허학회, 2003, 337-356면.
민충환, 「이태준의 전기적 고찰」, 『상허학보』 1, 상허학회, 1993, 33-53면.
박경모, 「1930년대 서대문형무소의 일상」, 『한국근현대사연구』 66,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65-116면.
박진숙, 「이태준 문학과 종교적 이상주의」, 『작가세계』, 2006년 겨울, 94-114면.
_____, 「일제 말기 사회사업의 텍스트화 양상과 그 의미」, 『개신어문연구』 32, 개신어문학회, 2010, 123-162면.
배개화, 「이태준의 장편소설과 국가총동원체제 비판으로서의 '일상정치'」, 『국어국문

학』 163, 국어국문학회, 2013, 419-454면.
_____. 「1930년대 말 치안유지법을 통해 본 조선 문학: 조선문예부흥사 사건과 조선 문학자들」, 『한국현대문학연구』, 한국현대문학회, 2009, 205-241면.
야규 마코토, 「식민지 공공성과 3.1운동- 의암 손병희를 중심으로-」, 『퇴계학논집』24, 영남퇴계학연구원, 2019, 67-97면.
우정덕, 「이태준 신문·잡지 연재소설에 나타난 '연애'와 '계몽'의 관련성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91면.
장성규, 「이태준 문학에 나타난 이상적 공동체주의」, 『한국문화』 3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137-168면.
조성은, 「근대 사회사업 개념과 담론에 관한 연구-1920년대와 193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2, 1-204면.
채호석, 「통속과 계몽, 그리고 (제국)의 논리」, 『식민지 시대 문학의 지형도』, 역락, 2010, 145-169면.
최종길, 「식민지 조선과 치안유지법의 적용-1926·27년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0, 한일관계사학회, 2008, 497-531면.
허영란, 「관치(官治), 식민지에서 '법의 지배': 한말·일제강점기 '법'과 '법치'에 대한 한국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51, 이화사학연구소, 2015, 33-72면.

<Abstract>

A Study on the Thought on Colonial Legal System and Publicity in Lee Tae-Joon's Novels

－Focusing on Lee Tae-jun's *Even the Law is So* and *The exuberance of youth(青春茂盛)*

Lee, Haeng-Mi

This article looked into the political meaning implied in the actions and perceptions of characters about publicity based on the legal basis, focusing on Lee Tae-jun's mid-length novel *Even the Law* and the novel *The exuberance of youth(青春茂盛)*. It is the legal definition that Lee Tae-jun has been particularly interested in. Lee illuminates the lives of beings excluded from the colonial system represented by law, and made the issue of raising their rights to the public sphere as a key event in the novel. The narrative unfolding in the background of the colonial court shows the artist's sense of problems.

Furthermore, the community formed by such excluded beings becomes the subject of a project that realizes public values outside the colonial social system. These are formed by embracing each individual's private life and sharing the spiritual value of friendship. Also, their solidarity is structured in a way that goes beyond legal registration, which is the basic condition of the people. This new community, which seeks to realize individual freedom and social justice, which are not guaranteed by the state, raises the question of the dominant publicity and expresses the public values to be pursued in a new direction. This is even more problematic as colonial power prevailed at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rule as it became more acute when it became difficult to construct an independent social domain separated from the state. In a situation where the oppression exerted by the national law is becoming stronger, Lee is suggesting an alternative publicity for the ‘outside’ of the law.

Key words: Lee Tae-jun, law, court, justice, colonial publicity, friendship, society, the excluded

투 고 일 : 2020년 8월 26일 심 사 일 : 2020년 8월 21일–9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0년 9월 12일 수정마감일 : 2020년 9월 26일